

시 정 질 문 서

【강일원 의원】

1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지난 9월18일자로 확정 고시한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
 -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55개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향후 촉진지구 조정과 아울러 촉진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뉴 타운 사업본부 내지는 조직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에 대한 시정부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

2. 우리 시는 문화의 도시라는 명분아래 각종 박물관이 타시에 비하여 그 수가 많다고 할 것이나 향후 우리 시의 어린아이들에게 한국판 “스타워즈”를 만들 수 있는 꿈을 향한 시립천문대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소사본동 133-14일대에 대한 【판매 및 영업시설】 부지 용도지역 폐지
 - 소사구 소사본동 133-14일대는 (부천농축수산물유통센터부지 1만여평) 현재 소사 역세권 지구단위지역 시행지침 G6(B-13블럭,판매 및 영업시설) 특별설계단지로 지정되어 있음.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대로 1만여평 부지의 용적률 250%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, 주변 재래시장 및 상가 상인들의 생업을 전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, 현 시장은 동 부지에 대형유통시설을 절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농·축·수산물의 도·소매 등 어느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시설업이 가능함을 서울주철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?
본 부지는 부천시 중장기도시계획에 의거 당초 주거지역으로 되

어 있는바 국토의 이용및계획에 관한법률에 의거 현재 도시계획
상 용도지역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?
더불어 기존 재래시장의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?